

『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의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6·7월에서 5·6월로 앞당겨 조정 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(안 제4조 제1호)
 - 7월 7일 ⇒ 6월 2일(단, 시행일 2017년 1월 1일)
-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제44조,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4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·7월에서 5·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조정(안 제4조 제1호)
 - 7월 7일 ⇒ 6월 2일(단, 시행일 2017년 1월 1일)
-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(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)
 - 제2차 정례회 ⇒ 제1차 정례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의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를 위한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현행 6·7월에서 5·6월로 앞당겨 조정하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2017년도부터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6월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,
-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함으로써 제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안건의 분산 효과, 감사자료의 충분한 검토시간 제공 등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
- 지난 1월 27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,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계 법령

[지방자치법]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44조(정례회)

-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- 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지방자치법 시행령]

제39조(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)

-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.

제54조(정례회의 집회일 등)

-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·6월 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 중에 열어야 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 중에 열 수 있다. <개정 2016.1.12.>

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시행일 : 2017.1.1.] 제54조 제1항